



DEPARTMENT OF THE ARMY
HEADQUARTERS, 2D INFANTRY DIVISION
ROK-US COMBINED DIVISION
BLDG 6500, UNIT #15041
APO AP 96271-5041

EAID-CG

2021년 6월 25일

수신: 미 2사단/연합사단 소속 장병 및 군무원

제목: 지휘 지침서 #5: 미 2사단 괴롭힘 방지 및 대응 프로그램

1. 본 지침서는 모든 전의 미 2사단 괴롭힘 방지 및 대응 프로그램 관련 지침을 대체함. 이는 폐지되거나 대체될 때까지 유효함.

2. 참조:

- a. 미 육군규정 600-20, 육군 지휘 지침서, 2020년 7월 24일
- b. 미 8군 지휘 지침서 #2, 미 8군 괴롭힘 방지 및 대응 프로그램
- c. 미 2사단 지휘 지침서 #8, 2020년 12월 23일

3. 미 2사단/연합사단은 가치 기반 조직으로서 구성원 모두가 서로 및 타인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갖고 올바르게 대우할 의무가 있음. 미육군 소속 구성원이라면 어떠한 유형의 생활방식과 소통으로든 (예를들어, 비대면 및 대면) 모든 타인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.

4. 모든 미 2사단 구성원 특히 리더의 역할을 부여받은 인원은 술선수범의 자세로 타인을 향한 폭력적인 대우 예방에 앞장서야 함.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 2사단/연합사단에 불명예를 불러올 뿐 아니라 부대의 전략적 영향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. 타인 혹은 타인의 소유를 향한 부당한 군기 잡기, 갑질, 그리고 차별적 따돌림은 금지되어있으며, 괴롭힘 관련한 혐의 입수 시 당사자들의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즉각적 및 개개인적인 조치가 내려질 것임. 부당한 군기 잡기, 갑질, 비대면 위법행위, 그 외 다른 위법행위들은 신뢰와 윤리를 훼손하며 지휘 환경 및 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. 모든 미 2사단 구성원은 괴롭힘(군기 잡기, 갑질, 차별적 따돌림) 목격 시 지휘관/상관, MEO, 혹은 법집행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. 미 2사단 구성원 중 비대면온라인을 통한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겪거나 목격시 즉각적으로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할 것임. 그 외 신고기관과 관련 정보 접근 대안 매체는 다음을 포함함: 군인가족지원서비스, 군기회균등, 균등고용기회, SHARP, 그리고 미육군법집행기관. 모든 피해자 및 신고자는 보복 위협 및 양갈음 행위로부터 보호될 것임.

EAID-CG

제 목: 지휘 지침서 #5: 기회 균등(EO) 처우 및 대응

5 발의. 본 지침서는 미 2 사단 기회 균등 부서에서 발의됨. 담당관 연락처는 미 2 사단 기회
균등 프로그램 관리관 DSN 732-7342, 또는 미 2 사단 기회균등 선임자문관 DSN 756-6375 임.



DAVID A. LESPERANCE
Major General, USA
Commanding